

안전보건공단 전국 연락처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14, 15층	02-828-1662
서울북부지도원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봉래동1가10번지) 우리빌딩 7, 8층	02-3783-8351
강원지도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56
경인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서구 한빛로 15(가정동 491)	032-570-7261
경기남부지도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511(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층	031-259-7264
경기북부지도원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28-1951
경기서부지도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센트럴시티 2층	031-481-7542
경기동부지도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쇠골로 17번길 3 소곡화관 2층	031-785-3356
부천지도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9(상3동 538-3) 대신프라자 3층	032-680-6520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지 26(부곡동 64-31)	051-520-0594
경남지도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7-3)	055-269-0520
경남동부지도원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석산리 1440-1) 양산노동조합청사 4층	055-371-7512
울산지도원	울산광역시 남구 돌산로 146(달동 615-8) 국민은행빌딩 2, 4층	052-226-0564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9, 20층	053-609-0563
경북동부지도원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대도동 124-4번지)	054-271-2024
경북북부지도원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054-478-8064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 무역화관 8, 9, 11층	062-949-8784
전남동부지도원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061-689-4911
전북지도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 1가 807-8) 고용노동부 종합청사 4층	063-240-6563
제주지도원	제주 연삼로 473(이도2동 390)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064-797-7526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042-620-5634
충남지도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11
충북지도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가경동) KT 3층	043-230-7116
본부 서비스업재해예방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34-4)	032-510-0647



음식업

음식 및 숙박업 사고사례 만화집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산업재해예방
중심·전문기관 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통해 안전한 일터,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전문기관입니다.



마음으로 전하는 안전보건 서비스 **서비스업 안전** ^{+(터하기) 사업}

안전터하기
사업 소개

안전^{+(터하기)} 란

서비스업 사업장과 생활주변에 안전을 더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자는 의미

사업내용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재해예방OPL(One Point
Lesson), 스티커 등과 같
은 콘텐츠를 전달해 주는 자
원봉사 서비스입니다.

- ▶ 2012년 30만 개의 서비스업 사업장을
500명의 안전지킴이 요원들이 찾아
갑니다.
- ▶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
공단이 함께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약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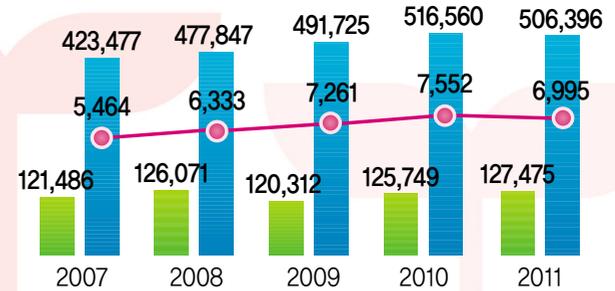
당신의 안전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손실액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사고자 수 매년 580여명씩 지속증가

- 사업장, 근로자 수 대비 재해자 수 -



■ 사업장 수
■ 근로자 수
■ 재해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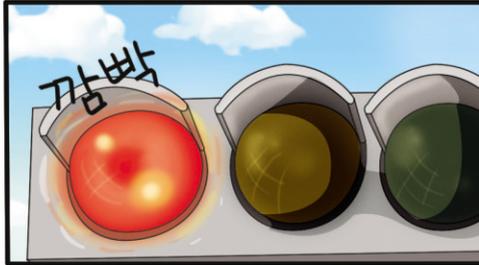
- 사업장 수 연평균 3,800여개소 증가
- 근로자 수 연평균 25,000여명 증가



음식점의 24시간

1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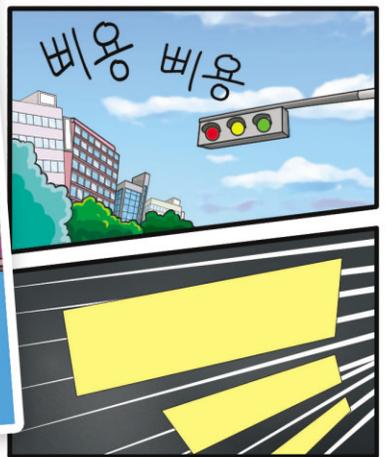
성규야~
배달이다!



교통사고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중 교통사고

오토바이로 배달 갔다 오다 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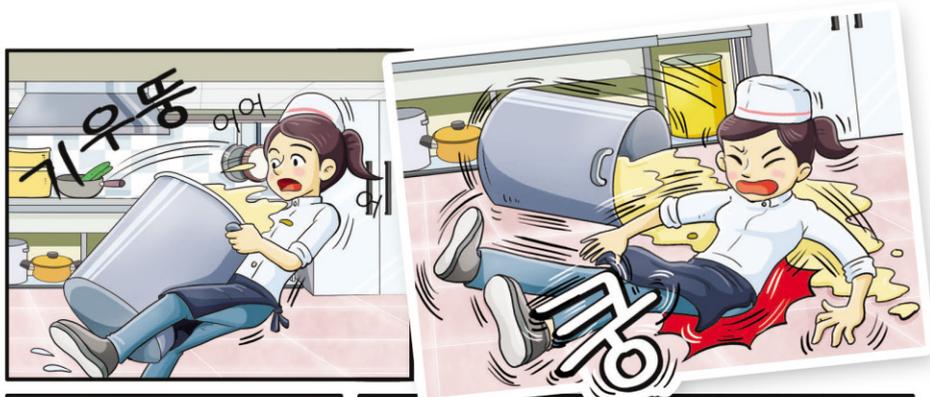
- 사고예방 대책**
- ▶ 교통신호의 준수 철저
 - ▶ 교차로 통행 시 좌우 확인 철저
 - ▶ 안전장비(헬멧, 무릎보호대, 장갑 등 착용)



넘어짐 육수통을 들다가 미끄러져 부상

중국집 주방에서, 대형 육수통을 혼자 들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다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육수통을 놓치며 주방 바닥으로 넘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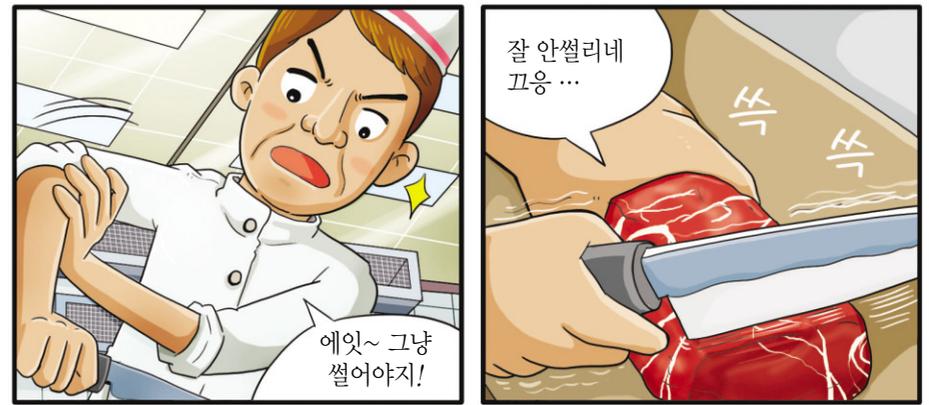
사고예방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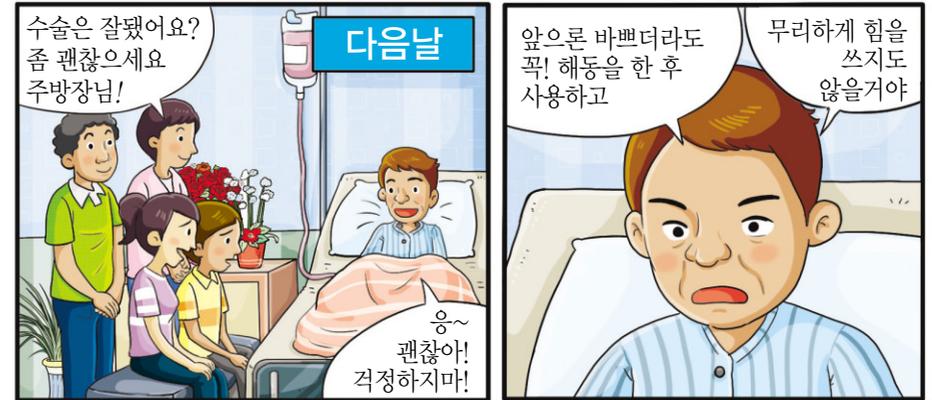
- ▶ 바닥에 물기는 수시로 제거
- ▶ 도움을 청해 2인 이상 함께 작업
- ▶ 미끄럼방지 장화 착용



배임 냉동고기를 자르다 손가락 배임

중국집 주방에서 칼로 냉동고기를 자르던 중, 잘 잘리지 않아 힘을 주었는데 순간적으로 냉동고기가 잘리며 손가락 끝 부분도 함께 배임은 부상





사고예방 대책

- ▶ 냉동 식재료는 충분히 해동시킨 후 작업
- ▶ 무리한 힘을 주어 작업하지 않기
- ▶ 배임방지 장갑 착용

중대재해 사례

2000년 0월 00일 00시경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중국집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하고 가게로 돌아오다 신호위반 직진 중 우측에서 달려오는 다른 치킨 배달용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치킨집 배달원이 넘어져 크게 다침. 00병원에서 치료 중 치킨집 배달원 사망



재해예방 대책

- ▶ 교통신호, 교통법규, 안전속도 준수
- ▶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 ▶ 눈길, 빗길 서행운전

중대재해 사례

2000년 0월 0일 00시경 전남 나주시 00동 웨딩홀 내 식당에서 운반용 덤웨이터가 내려오지 않아 재해자가 머리를 승강로에 넣고 보던 중 운반구가 내려와 머리가 끼여 사망한 사고



재해예방 대책

- ▶ 승강로에 신체 일부 또는 전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 출입문 연동장치, 비상정지 스위치 등의 안전장치 설치
- ▶ 설비 고장 시 수리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

업무 분담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디킨차이나

디킨차이나의 서준철 사장은 모든 것을 철저히 분업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홀은 아내인 관리부장이 관리하고, 주방은 주방장이, 배달은 서 사장이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 관련 교육은 매일 아침 회의에서 안전보건공단에서 나눠 준 스트레칭 관련 포스터를 보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후 이뤄진다.

손님들이 식사하는 공간은 깨끗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나오는 기본 반찬과 식기구들도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물건들이 음식을 나올 때 방해가 되어 직원들끼리 부딪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정돈해 둡니다. 또 음식물이나 기름 등이 떨어져 있거나 비나 눈이 온 후 손님들에게 물어 온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매일 두 차례 청소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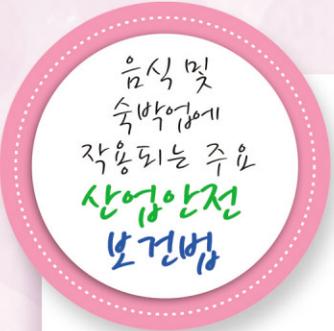
중국 음식점의 꽃은 배달. 하지만 여의치 않은 도로사정 등 배달 사고에 대한 걱정은 많다. 서 사장이 배달원들에게 항상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헬멧(안전모)과 보호구를 착용하고 다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배달통을 들고 오토바이를 탈 경우 사고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하게 뒤에 싣고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들을 사용하고 있다. 배달을 나갈 때는 신호 및 차선 지키기, 과속 및 끼어들기는 하지 말라는 당부를 잊지 않고, 후진차량이나 빙판길 등 도로에서 미끄러짐 등을 주의하는 한편 야간 운전 시 전조등을 켜고 충분한 시야 확보를 하고 다니라는 말도 꼬박꼬박 한다고.

뜨거운 불과 기름과 씨름하는 주방에선 음식을 한꺼번에 나올 때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요통을 방지하고, 바닥에는 물기가 없도록 주의하고 되도록 장화를 신고 일하도록 했다.

“공단에서 안전과 관련된 책자나 포스터를 나눠 주고 있어, 그 자료들을 이용해 서로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공단에서 교육이 있을 때면 참가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 일들이 직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가족같이 여기며 서로 힘을 합쳐 가게를 운영한다는 서 사장은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믿는 마음이 가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한다.

글· 신종섭 기자 / 일러스트 엄병도 작가



1 | 산업재해발생 기록 보고 등 (제10조) |

- ① 산업재해(사망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
 -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재해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재발 방지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규칙 제4조의 2 [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4. 재해재발 방지계획

2 | 법령 요지의 게시 등 (제11조) |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 안전·보건 표지 부착 등 (제12조) |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 안전조치 (제23조) |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 | 보건조치 (제24조) |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며 발생하는 건강장해

※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6 | 근로자의 준수사항 (제25조) |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제41조)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
|----------------------|-------------------------|
|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8 | 작업환경측정 (제42조) |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 건강진단 (제43조)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제45조)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법령은 고용노동부·경찰 합동점검 시 음식 및 숙박업 산업안전 보건법의 주요 위반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사업주는 [영 별표 1]에서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의 안전 - 체크리스트

- ▶ 조리실에서 미끄럼방지 장화를 신고 작업하는가?
- ▶ 작업 전·중·후 정리정돈을 실시하는가?
- ▶ 절단 작업 시 보호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는가?
- ▶ 야채절단기, 반죽기 등 주방용 기계의 입구에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재료 투입 시 투입봉을 사용하는가?
- ▶ 배식 시 이동식 대차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가?
- ▶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한 취급자세 및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 ▶ 음식물 운반용 승강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탑승금지 및 적정하중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 ▶ 가열된 조리기구 이동 시 화상방지를 위해 보호장갑을 착용하는가?
- ▶ 오토바이 배달 시 안전모, 무릎보호대, 장갑 등을 착용하는가?
- ▶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감속 운행하는가?
- ▶ 배달용 오토바이에 음식 적재함이 고정되어 있는가?
- ▶ 계단에서 급하게 뛰지 않고, 계단 난간대를 잡고 올라가는가?
- ▶ 배달 복장은 단정한가?(슬리퍼, 반바지 착용금지 등)

나의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칭!

목운동



양손을 깍지 껴 아래로 지긋이 누른다



엄지손가락을 턱에 대고 위로 천천히 민다



머리에 손을 얹은 후 옆으로 천천히 당긴다

어깨운동



양쪽 어깨를 위로 지긋이 올렸다가 내린다



천천히 원을 그리며 어깨 관절을 돌린다



팔꿈치를 몸 쪽으로 천천히 당긴다

팔목운동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과 손목을 돌린다



다섯 손가락을 짝 폄다 구부렸다가 반복한다



한쪽 손은 뒤로 젖히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긴다

허리운동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천천히 뻗는다



등 뒤로 깍지 끼고 팔을 위로 올린다



다리를 꼬고 앉아 허리를 비튼다

